

보도시점 : 2023. 4. 17.(월) 11:00 이후(4.18.(화) 조간) / 배포 : 2023. 4. 17.(월)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 3년 연장

- 국고보조금 등 사업비 지원도 3년 연장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4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 기간도 3년 연장된다.
 - 국토교통부는 '20년 5월부터 '22년 12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총 2,241동을 대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한 결과 1,382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완료('22년.12월 기준)되었으며,
 -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에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 전담 치료병원 지정 등으로 보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어린이집과 병원을 포함한 859동은 보강공사 진행 중이거나 건축물관리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보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 * '20~'22년간 국고보조금 17,966백만원 지원: 1,382동 × 13백만원
-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3층 이상 건축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당초 '22년 12월 31일까지 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사업이며, 총 공사비 4천만원 이내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각각 1/3씩을 지원하여 왔다.

-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사업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연장 기한 내에 대상 건축물이 화재안전시설을 보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 특히, “앞으로 보강기한의 추가 연장은 없으며, 이번이 보조금을 지원 받아 화재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건축물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책임자	과 장	김연희 (044-201-4987)
		담당자	사무관	윤광현 (044-201-4989)
			주무관	심상훈 (044-201-4986)



참고 1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개요

- **[관련 법령]** 「건축물 관리법」 제27조 ~ 제29조
- **[사업내용]**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당초: '20.5.1. ~ '22.12.31. 연장: '25.12.31.까지)
- **[사업대상]** 피난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요인 조건에 해당하는 건축물
 - 3층 이상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 *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연면적 1천㎡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화재성능보강 사업 대상 건축물 】

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필로티 구조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	무관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1,000㎡ 이하)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	●

- **[지원수준]** 총 공사비 4천만원 이내, 국가·지자체 각각 1/3 지원
- **[보강절차]**



- **[보강기한]** '25.12.31까지 성능보강 완료 후 지자체 보고하여야 하며,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비용도 '25.12.31.까지 지원
-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발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참고 2

화재안전성능보강 추진 현황

□ 세부 보강 추진 실적

○ 전체 2,241동 중 1,382동(61.7%) 성능보강 완료('22.12.31. 기준)

구분	계	피난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노유자 시설	의료 시설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원	학원	고시원	목욕탕	산후 조리원
보강 대상 건축물	2,241	1,301	420	178	13	291	27	11	-
완료 건수	2019년도	18	15	2	-	-	1	-	-
	2020년도	287	200	58	14	-	13	-	2
	2021년도	365	230	67	27	2	38	1	-
	2022년도	712	425	96	85	4	98	2	2
계	1,382 (61.7%)	870 (66.9%)	223 (53.1%)	126 (70.8%)	6 (46.2%)	149 (51.2%)	4 (14.8%)	4 (36.4%)	-
진행 및 미접수	859	431	197	52	7	142	23	7	-

참고 3

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별표]

구 분		비 고	
필수 적용	필로티 건축물	1층 필로티 천장 보강 공법	필수
		(1층 상부) 차양식 캔틸레버 수평구조 적용 공법	택1 필수
		(1층 상부)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공법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공법	
		(전층)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공법	
		옥상 드렌처 설비 적용 공법	
	일반 건축물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공법	택1 필수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공법	
		(전층)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공법	
선택 적용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공법	* 일반건축물은 필수	
	옥외피난계단 설치 공법	모든 층	
	방화문 설치 공법	-	
	하향식 피난구 설치 공법	-	